

2021년 제6회

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1년도 제6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1년 7월 30일

의정부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직 급	임용 분야	임용 인원	임용 기간	담당직무 내용	소속부서
계	2개 분야	3명	-	-	3개 부서
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(주35시간)	건축 안전 (건축구조)	1명	2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인허가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·확인·검토·심사 및 점검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·감독 건축물 유지 및 안전관리 지원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·관리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업무 수행 	건축 디자인과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20시간)	주차 단속	1명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 기타 교통지도 관련 업무 	흥선동 허가안전과 (예정)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20시간)		1명	1년		신곡1동 허가안전과 (예정)

2. 관련 근거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및 제27조, 제31조
- 나.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 및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 (행정안전부예규)
- 라.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마. 「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제14조 및 별표 5의3

3. 응시자격요건(아래 조건 모두 충족)

가. 공통요건

- 지역 및 성별: 제한 없음(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)
- 응시연령
 - 1) 건축구조: 20세 이상 (2002.1.1. 이전 출생자)
 - 2) 주차단속: 18세 이상 (2004.1.1. 이전 출생자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나. 직종별 요건

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임용예정 직 급	임 용 분 야	응시자격 요 건
시간선택제 임기제 나 급 (주35시간)	건 축 안 전 (건축구조)	<p>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건축구조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※ 직무분야 실무경력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, 민간기업 등에서 건축안전(구조) 등 관련 실무경력</p>
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(주20시간)	주 차 단 속	<p>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이면서 실제 차량운행이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※ 직무분야 실무경력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공기업, 민간기업 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등 관련 실무경력</p>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 (자격·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)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, 경력기간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.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
- ⇒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일 공고: 2021.8.11.(수) 예정, 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공고
- ※ 발표일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 (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증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

※ 평가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◆ 불합격 기준
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
-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
-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

◆ 추가합격자 결정: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 평정 우수한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◆ 재공고: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.(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

5. 보수수준

임용분야/임용예정직급	연봉액	산출기초	비고
건축안전(구조)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나”급	44,711천원	임기제공무원 6급(상당)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87.5%(근무시간 반영)	주35시간
주차단속 /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“마”급	15,735천원	임기제공무원 9급(상당)의 기준연봉 하한액의 50%(근무시간 반영)	주20시간

- ※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각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능력이나 자격·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
- ※ 연봉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 :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
- 접수기간 : 2021. 8. 5.(목) ~ 8. 9.(월) [3일간, 09:00 ~ 18:00]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)
 - 접수시간 : 09:00~18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 - 우편접수 불가,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자격검증 동의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- 접수처 : 의정부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(의정부시 시민로 1, 본관 2층)



7. 시험일정

구 분	기 간
원서 접수	2021. 8. 5.(목) ~ 8. 9.(월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	2021. 8. 11.(수) 전·후
면접시험	2021. 8. 13.(금) 전·후
최종 합격자 발표	2021. 8. 17.(화) 전·후
임용예정시기	2021. 9월 중(예정)

◆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
 ※ <http://www.ui4u.go.kr> 접속 → 시정소식 → 시험정보 → 합격자 발표
 ◆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8. 제출서류

구 분	내 용	비고
1.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1호)	자치행정과 인사팀 경유 민원여권과(본관 1층)에서 수입증지 첨부할 것	필수
2.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	증명서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기재(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)	필수
3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	A4용지 2매 이내	필수
4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	A4용지 5매 이내	필수

구 분	내 용	비 고
<p>5. 경력(재직) 증명서 (별지서식 제5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담당업무,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- 발행기관 직인,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○ 시간제 근무, 비상근직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등 근무 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○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○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※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</p>	<p>해당자 제출</p>
<p>6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(별지서식 제6호)</p>	<p>해당 자격요건 체크 표시</p>	<p>필수</p>
<p>7. 동의서 (별지서식 제7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) 	<p>필수</p>
<p>8.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(별지서식 제8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자원봉사 실적 제출 (2019. 7. 30. ~ 2021. 7. 29.) 	<p>해당자 제출</p>
<p>9.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○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라더라도 학사 학위증명서 제출 <p style="color: red; font-weight: bold;">※ 해외 학위는 반드시 한글번역문을 공증하여 첨부</p>	<p>필수</p>
<p>10. 기타 증빙서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련 분야 자격증 및 수상실적 사본(원본 지참) ○ 운전면허증 사본(원본 지참) ○ 기타 자격증 등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(원본지참) ○ 관련 분야 연구실적(논문, 저서 등) 	<p>해당자 제출</p>
<p>11. 주민등록초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민등록초본 1통(현재주소만) 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	<p>필수</p>
<p style="color: blue; font-weight: bold;">※ 주의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출서류 편철 시 스테이플러, 클립, 플래그(띠지) 등 사용금지 ○ 모든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이 원칙이나,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 원본 지참 ○ 해외 발급 증명서류는 공증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○ 모든 증명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	

9. 기타사항

-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의제 규정을 적용합니다.
-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※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서식은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,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자 및 서류전형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(연장)공고 할 수 있으며,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모든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(선발)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(<http://www.ui4u.go.kr>) 시험정보란에 공고 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▶ 임용절차 관련 문의 : 자치행정과 인사팀 (☎031-828-2315)
- 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임용분야	직무관련 부서	연락처
건축안전(구조)	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팀	031-828-4592
주차단속	흥선동 허가안전과 주차관리팀	031-870-6962
주차단속	신곡1동 허가안전과 주차관리팀	031-870-7542